

300-5-113. 신문조서(李載裕 외 6명 치안유지법 위반) 1

■ 1937년 5월 1일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보고한 치안유지법 위반 등 피의사건 수록

-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李載裕, 치안유지법 위반 邊雨植·徐球源·崔浩極·梁成基·高柄澤, 치안유지법 위반 및 범인은닉 閔泰福을 구속하고, 윤재선·박기석·박임선·강충·곽영기·김용갑·한봉식·최호능·오원길·민영현·이선우·김문현·전창수·김응규·이묘원·이지원·이관술·이종국·이종희·송유근 등은 불구속 송치하였다.
- 피의자들의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.
 - 이재유: 결사와 조직 목적 수행을 위한 협의와 선동, 금품공여, 국헌을 문란케 한 출판과 출판물 배포
 - 변우식 : 협의와 결사 가입
 - 서구원: 결사 가입과 협의, 선전선동, 국헌을 문란케 하는 문서의 인쇄 방조
 - 최호극: 결사가입,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, 협의, 선전선동, 국헌을 문란케 한 문서의 출판방조
 - 양성기: 결사가입 협의
 - 민태복: 범인은닉 협의, 재산상의 이익 공여, 국헌을 문란케 한 문서의 출판 방조,
 - 고병택: 결사가입과 협의 등 범죄사실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에 의해 기소처분
 - 윤재선·박기석·박임선·강충·곽영기·김용갑·한봉식·최호능·오원길·민영현·이선우·김문현·김응규·김창수·이묘원·이지원의 범죄는 치안유지법 등의 위반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
 - 이관술·이종국·송유근·이종희도 동 법 위반이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 상신
- 이재유를 비롯한 그들의 범죄 사실은 문서번호 0086-0212를 참조